

# 環境教育關聯法制에 관한 研究\*

蔡羽爽\*\*

## 《 차 례 》

- I. 처음에
- II. 環境教育의 目的과 役割
- III. 環境教育의 現況
- IV. 日本의 環境教育推進法の 制定
- V. 맺음말

## I. 처음에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가, 국민 및 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환경오염의 문제를 적절히 대처해야한다. 즉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협력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의 헌법 제35조는 국가와 국민을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협동의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명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오염·환경훼손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더불어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제2항)’,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의무도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의 원인은 우리의 일상생활 내지는 일반적인 산업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의 일부 계층이나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崇實大學校 法學科 敎수, 法學博士

일부의 관계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여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말 그대로 국민 개개인이 모두 합심하여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의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겠으며, 평소에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개개인의 실천적 행동의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에 관한 교육문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002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환경보전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의 추진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 입법화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고는 주로 일본의 환경교육에 관한 상황과 법제의 배경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환경교육법제의 현실에 시사를 얻으려고 한다.

## II. 環境教育의 目的과 役割

### 1. 環境教育의 概要

환경교육이란 용어는 1948년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보존연합의 설립총회에서 영국인 토마스·프리처드(Thomas Pritchard)가 사용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지고 있다.<sup>2)</sup> 이러한 환경교육은 미국교육에서 발달을 갖는 자연교육, 야외교육, 보전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 미국이 연방환경교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그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연방환경교육법에서 환경교육은 인간이 자

1) 현대의 환경문제는 특성상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시민 개개인의 협력이 요구되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표방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념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하여는 김번용·오영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437면 이하.

2) Disinger, John F. (1985) “What Research Says” School Sci. Mathe., 85 (1) 59-68.

연환경과 인공적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적인 과정으로 여기에는 인구, 공해, 자원의 분배와 배설, 보존, 교통, 기술 및 총체적 인간환경에 대한 도시 및 지방계획과의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3)</sup> 이후 미국은 1980년대 아리조나주, 플라리다주, 아이오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등 각주에 학교들이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각종의 법률을 제정하였고, 위스컨신주에서는 교육과정전략을 제언할 수 있는 교육목표가 포함된 주의 환경교육계획 지침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4)</sup> 미국의 연방환경교육법은 1975년, 1981년의 개정을 거쳐 1990년 11월 부시대통령이 새로운 환경교육법<sup>5)</sup>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는데, 이 법에 의하여 전국환경교육 및 훈련재단(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청 산하에 환경교육사무국(the 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with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up>6)</sup>이 설치되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립하고 있다.<sup>7)</sup>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여러 가지 비참한 공해병이 발생하고 이후 각종 생활공해가 발생하면서 과거의 대중요법적 방법으로는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였고, 1980~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환경교육의 조직적인 대응이 착수되었다고 한다.<sup>8)</sup>

환경문제는 환경을 구성하거나 환경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환경문제는 인간의 속성 및 그 형태와 자연의 속성 및 그 제약조건의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역화되고 장기화되며, 한번 오염되거나 파괴된 환경은 원상회복이 매우 힘들고, 설령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도 많은 경비와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환경은 가능한 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박준희, “환경교육”, 환경교육시리즈 제1권 8호, 환경교육시리즈, 이화여대 환경문제연구소, 1973, 10면.  
 4) 이용환,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환경교육의 방향”, 『과학과 교육』 제4집, 순천대학교, 1996, 139면.  
 5)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1990 (Public Law 101-619).  
 6) Sec 4. 환경교육사무국은 ① 다른 연방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연환경,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개발·지원하여야 하고, ② 초등, 중등학생과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모델적인 커리큘럼, 교육자료,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해야하고, ③ 연방행정기관, 비영리적 교육기관, 환경기관, 주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출판물과 시청각 교재물 등을 개발·보급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Marcinkowski, Thomas.J. The New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 A Renewal of Commit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Vol. 22, No 2, 7-10 (1990).  
 8) 阿部治, “環境教育のあり方”, JURIST 1015号, 1993, 164頁.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법적 규제나 행정 단속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이에 따라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매우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교육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문제, 평화교육, 사회환경 등 매우 폭넓은 개념을 대상으로 보아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자연에 대한 감성을 함양시키는 자연교육, 자연친화적인 인간의 존재를 가르치기 위한 야외교육, 모험교육 등의 체험교육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교육, 개발도상국의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공해의 현실에 대한 교육, 지구온난화 등의 국제적 환경오염 등도 환경교육의 활동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소비자교육, 재활용교육, 에너지 등에 대한 교육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깊이 관여하는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교육이란 인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오염·자원고갈·인구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으며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위적 환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 관계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지식 전달, 의식 변화, 습관과 기능 개발, 가치관 함양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연령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방법은 단순하게 지식과 자료의 전달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학년단계·학교단계, 학습영역과 각 교과와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일관된 지도계획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 국제연합(UN)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여러 국제적 관련 기관에서 공동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0)</sup>

9) 권중선, “초등학교 실과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제2권 1호, 1996, 107면.

10) 국제적 기구에 의한 환경교육의 논의는 Stapp, William B,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UNESCO-UNEP Programm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8(2), 20 (1976). 이용환, 앞의 책, 137면 이하.

## 2. 環境教育의 目的

환경교육의 목적은 미국의 연방환경교육법 내지 환경교육의 국제적 규범인 베오그라드 헌장<sup>11)</sup> 등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요약하면, ‘환경문제의 해결에 참가하고, 환경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베오그라드헌장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목적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상호의 관계를 포함한 생태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국의 국민은 스스로의 문화를 배경으로 생활의 질 내지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기초적 개념의 의미를 환경과 관계에서 명백히 할 것, 또한 어떠한 행동이 사회의 보전과 발전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적·개인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가를 명백히 할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는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 향상’,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의 문제까지도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근원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環境教育의 役割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환경문제는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된 시장경제와 물질지상주의는 시민을 상품화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파괴하였으며, 산업자본주의의 실현에 따라 환경파괴와 국제적 남북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현재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또는 미래의 세대와의 세대간의 평등문제, 나아가 동세대간의 갈등문제, 한편,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 또는 무생물과의 환경윤리문제 등에서도 책임을 공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현재 우리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대간 또는 동세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에서, 한편 환경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케인즈적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개발·자원정책 등 경제개발과 더불어, 재정·보조금정책을 토대로 하는 계획경제에 의한 호송선단이라고 불리는 공공적 소비에 따른 물품 생산의 확대를 이루어왔으며, 정치적으로는 의회제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政官財界의 유착으로 압력적 지배정치가 횡행하였으며, 정치행정과정은 불투명하고,

11) UNESCO, Connect 1 (1) (1975).

시민들의 참가권과 사법적 구제는 선진제국과 비교하여 매우 불충한 하였기에 환경법의 역할은 늘 개발법의 뒤에 위치하는 기능밖에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12)</sup>

우리 사회의 일단면을 적시하는 현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는 집단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날로 퇴폐한 향락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국민, 기업, 정부 등이 스스로 시민정신을 재수립하고 환경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변질되어 가는 윤리와 도덕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Ⅲ. 環境教育의 現況

#### 1. 우리나라의 環境教育의 現況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3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나아가 제1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의 3은 2002년 12월의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어진 것이며, 제16조는 1990년 제정당시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하는 규정을 1999년12월에 개정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입법적 배경을 이해하면, 환경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과거의 소극적인 환경보전의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환경관리의 행정으로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에 대해 환경의 질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또한 정부가 보

12) 山村恒年, “國家のゆらぎと環境法”, 公法研究, 2002, 75頁.

유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sup>13)</sup>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정보공개, 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우리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환경교육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각종 워크숍·심포지움·학술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sup>14)</sup> 환경교육연구부 등 교육담당기구들이 생겨났다. 또한 환경부<sup>15)</sup>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1985~90년대 24개교의 ‘환경보전시범학교’<sup>16)</sup>를 운영하였다.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제10차년도(2003-2004년)까지 각각 26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sup>17)</sup> 한편, 정부는 1992년 세계 환경의 날 20돌을 맞이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1993년에 1992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던 ‘환경교육시범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sup>18)</sup>

1990년에 개편된 교과서는 환경교육 분야를 대폭 강화하여 다루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환경정화가 근본적으로 인간생명 문제와 직결됨을 강조하였고, 중학교 과정부터는 종전의 환경보호문제를 환경보존 개념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학교환경 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1995년)에서 환경과목을 독립된 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정착기에 접어드는데, 중학교의 경우 1995년부터 학교장의 재량으로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1996년부터 독립된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나아가 환경부에서는 2000년 이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한편, 2002년 3월말 현재 196개 대학에서 환경관련 학과가 개설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경관련학과의 정규규정 뿐만 아니라 교양강좌 시간을 통해서도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 민간단체<sup>21)</sup>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992년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1995년

13) 山村恒年, 環境保護の法と政策, 信山社, 1996, 65頁.

14) 한국교육개발원은 1970년대부터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방진영·김대희,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과학과 교육』 제8집, 2000, 89면.

15) 1990년에 환경청에서 환경처로 바뀌었고, 환경부는 1994년에 발족하였다.

16) 1985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하여 2년간씩 운영하였고, 나름대로 환경교육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방진영·김대희, 앞의 책, 90면.

17) 환경부, 『환경백서』, 2003, 105면.

18) 앞의 책, 90면.

19) 앞의 책, 91면.

20) 최병두, “대학 및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과학연구』 제6집 1호, 대구대학교, 1999, 194면.

21) 환경관련 민간단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2년 말 현재, 허가법인이 227개, 환경사회단

을 기점으로 하여 야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공식적인 참가자 수가 수 천 명이 넘을 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고 한다.

## 2. 日本의 環境教育의 現況

1993년 11월 19일에 제정된 일본의 ‘환경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진흥,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에 따라 사업자 및 국민이 환경보전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25조), ‘국가는 제 25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진흥과 함께,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권리와익을 배려하면서 환경상황,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제27조). 특히 제27조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보전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공개의무에는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 절차,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기본법에서 무한정 범위의 의무규정을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결국 노력의무규정으로 놓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환경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폐기물 등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공해에 시달렸던 지방자치단체는 1980년 중반에 환경관련부국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하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상황<sup>23)</sup>을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 1) 環境教育行政

일본의 환경청은 1987년 이후 ‘지역환경교육 커리큘럼’이란 명목으로 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 도도부현 등의 도시에 1990년부터 설치된 지역환경보전기금(지자체에 따라 4억~100억엔의 규모)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환경교육은 환경청에 의해 ‘환경교육보고서’로 정리되어 있다. 한편, 많

체가 258개, 환경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가 68개로 총계 552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부, 환경백서, 114면.

22) 石野耕也, “環境基本法の制定経緯と概要”, *ジュリスト* 1041号, 1994, 46頁.

23) 본 장에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阿部治, “環境教育のあり方”, *ジュリスト* 1015号, 1993, 167頁 이하에서 많은 참고를 얻었음을 밝혀둔다.

은 지자체들이 환경교육부교재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환경청은 ‘모두가 쌓아 나아가야할 보다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1988)’라고 하는 환경교육지침을 정리하였으며, 환경교육담당직원으로 환경교육전문관(1989)을 설치하였고, 환경보전활동추진실(1992)을 확충하여 환경교육을 환경행정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문부성도 환경교육전문관(1991)을 설치하였고, ‘환경교육지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都道府縣·政令指定都市教育委員會도 독자적인 환경교육지도자료를 작성하였다.

## 2) NGO의 活動

1987년 일본형 자연환경교육의 확립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결성한 것이 清里環境教育포럼(현재는 일본환경교육포럼으로 전환)이다. 이후 5년간의 연구와 실천의 결과물로서 ‘일본형 환경교육의 제안(1992)’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990년에 환경교육을 주제로 하는 학회로 일본환경교육학회<sup>24)</sup>가 발족하여 회원수는 이미 1100명을 넘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환경교육단체로 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환경보호단체가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사업화한 단체도 많이 증가하였다.

## 3) 企業의 活動

1991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약칭 經團連이라고 한다)는 지구환경헌장을 발표하고 기업으로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자세를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환경사업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많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제대응에 의한 대응요법적 환경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업기회로서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활동이 중심과제로 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25)</sup>

# IV. 日本의 環境教育推進法の 制定

일본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법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 사업자, 시민단체의 의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여당 내에 프로젝트팀이 구성이 되어 환경교육과 환경학습을 충실하게 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전에 ‘환경교육진흥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하였던 민주당과의 조정과 더불어, 다른 각 당과의

24) 본 학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oc.nii.ac.jp/jsoee>

25) 阿部治, 前掲書, 168頁.

협의를 거친 후에 2003년 7월 15일에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환경위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후 같은 날에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지고 참의원에 송부되었다. 그 후 7월 17일에 참의원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다음 날인 18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입법화에 성공을 거두었다. 동 법률은 7월 25일에 2003년 법률 제130호로서 공포되었다.

이하, 일본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추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정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sup>26)</sup>

## 1. 目的 (第1條)

동 법률은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에 대해,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나아가 국민, 민간단체 등,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 함께, 기본방침의 책정, 기타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국민건강과 문화적 생활의 확보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동 법률은 ① 환경보전활동, ②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③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들 세 개의 개념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관한 규정에서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과 환경교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환경보전활동에 관하여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의 경우는 국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의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할 내용이며, 행정부에 의한 정착되어야 할 활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법률의 정책부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6) 주요내용에 관한 정리는 池田研造, “環境保全意欲増進・環境教育推進法”, JURIST 1252号, 2003, 61頁 以下에서 많은 시사를 얻었음을 밝혀둔다.

## 2. 定義 (第2條)

제2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에 관해 각각 정의하고 있다. ① ‘환경보전활동’이란 환경보전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활동 가운데, 환경보전상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항).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에는 여러 가지 성격 및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동 법률에서는 환경보전상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을 ‘환경보전활동’이라고 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갖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이라고 하고, 이들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환경보전의 의욕증진’이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체험의 기회제공 내지 편의제공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며, 내지는 환경보전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증진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구체적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구체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행하는 의욕증진을 위해 여러 활동의 노하우 등의 정보제공, 자연체험활동 등의 체험기회의 제공 및 이를 위한 기자재의 대출 등의 편의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환경교육’이란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개인의 생각 등 개인의 내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으로 행하여지는 단순한 자료제공과는 구별된다.

## 3. 基本理念 (第3條)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은 국민,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각자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즉 국민,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사존중과 다양한 주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은 자연체험활동 등 기타체험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심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즉 지역주민의 참가와 협력, 투

명성확보 및 지속적인 실시 등에 관한 이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동 법률은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의 육성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배려, 국토보전 및 기타 공익과의 조정에서의 유의, 농림수산업 등과의 조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의 유지·향상,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문화 및 역사의 승계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3항).

#### 4. 責務 (第4條-第6條)

동 법률 제4조에서는 국민, 민간단체 등의 책무에 대해, 제5조에서는 국가의 책무가, 제6조에 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5조 1항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및 실시에 있어서는 국민, 민간단체 등과 적절한 연대를 도모하도록 유의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5. 基本方針 等 (第7條-第8條)

정부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기본방침)을 규정해야한다(제7조 1항). 이러한 기본방침에는 ①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동조 2항 1호), ②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하여, 정부가 실시해야 할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동조 2항 2호)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는 각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장관과 문부과학장관이 기본방침에 관한 안을 적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또한 기본방침안의 작성은 농림수산업장관, 경제산업장관 및 국토교통장관과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동조 4항), 널리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제5항). 한편, 都道府縣 및 市町村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감안하여 지역의 구획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방침, 계획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제8조).

#### 6.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의 施策 等

동법 제9조 내지 제24조에서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學校에서의 環境教育 (第9條)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환경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과 또한 학교교육에서 체험학습 등을 위한 조치,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한 조인, 지도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같이 때 등록인재인정 등 사업(제11조 이하에서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환경보전의 지식, 경험 등을 갖춘 인재가 널리 활용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職場에서의 環境教育 (第10條)

민간단체,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할 사람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보전의 의욕증진과 환경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登錄人材認定 等 事業 (第11條-第17條)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환경보전에 관한 지도를 할 능력을 갖춘 자를 육성 또는 인정하는 사업(이하 인재인정 등 사업)을 할 국민, 민간단체 등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 주무부장관(환경대신, 문부과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에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1항). 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지역의 대응을 지원할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재육성 또는 인정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장관에 의한 등록제도를 채택하였다.

주무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사업(등록인재인정 등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에 의해 공시되어야 하며(제11조 5항),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해당되는 인재인정 등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사회적 신뢰성을 보완되어질 것이다.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인재인정 등 사업이 ①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② 해당되는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데 충분한 주무부장관의節省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제11조 4항).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주무부장관의 임의로 되어 있으며, 비록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인재인정 등 사업은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받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은 인재인정 등 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명확하게 오인되어질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제28조). 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6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실시하는 인재육성·인정사업에 대해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정보제공, 조언, 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제16조).

#### 4) 人材育成 (第18條)

주무장관은 환경보전에 관한 인재육성을 위한 안내, 기타 자료 등의 작성, 제공 등을 실시하는 국민, 민간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항), 또한 해당되는 자료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제2항).

#### 5) 體制整備 (第19條)

국민, 민간단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실시하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과 상응해서 국가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체제정비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제1항). 이러한 거점기능으로는 ① 국민,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내용에 관한 정보 등의 수집·제공(동항 제1호), ② 국민, 민간단체 등이 요구하는 조회와 상담 등에 대해 조언할 것(제2호), ③ 국민, 민간단체 등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교류를 위해 기회를 제공할 것(제3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체제정비가 갖추어짐에 따라, 각 주체의 상호연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환경보전의 의욕증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각 정부부처의 지방부서와 관련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체제정비가 갖추어지도록 될 것이다.

또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국가차원에 서의 기능을 담당할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6) 土地提供 (第20條)

국가는 국민, 민간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자연체험활동을 위한 장소로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의 의욕증진을 위해서는 체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촉

진시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7) 協同對應 (第21條)

국가는 협동대응(둘 이상의 국민, 민간단체 등이 각각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대응)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은 각 주체들이 스스로 자주성을 살리면서,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여야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필요한 협력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 財政措置 (第22條)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치, 기타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조치로서, 국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원조성을 위한 조치, 자연체험활동 등의 장소로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情報公表 (第23條)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환경보전의 의욕증진내용에 관한 정보,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제1항). 이렇게 각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각 주체간의 정보의 공유화가 실현되고 각 주체간의 협동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0) 配慮 (第24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을 하는 국민, 민간단체 등의 자립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하며, 동선에 해당되는 각종 조치는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앞에서 정리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국민, 민간단체에 대해, 조언, 지도,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오히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민간단체 등을 과도하게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민, 민간단체 등의 자립성을 담

보하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되며, 나아가 여러 다양한 조치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7. 附則

동법 부칙에 따르면 동 법률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인재 인정 등 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1년 후인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정부는 동 법률이 시행된 후 5년을 기준으로 동 법률의 시행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8. 檢討

이상 일본에서 제정된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주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법률내용의 대부분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 및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국민, 민간단체, 사업자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법률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동 법률이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상당 부분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법률은 우선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환경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5년 정도의 기간에 실시된 내용을 평가하여 다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 법률은 일반적인 입법의 필요성과는 달리 상당히 실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입법태도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본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성, 환경오염에 관한 심각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V. 맺음말

공해와 자연보호를 원점으로 하는 환경행정은 최근에 들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의 환경행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규제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공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원인물질의 배출에 대해 규제행정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보전구역을 정해 놓고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환경의 문제, 도시와 생활형 공해, 대량의 폐기물 등의 문제는 종래의 방법으로는 이미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sup>27)</sup>을 얻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권이 인정되면서 구체적 성격으로 재산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격권적 성격<sup>28)</sup>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같은 환경권을 승인함으로써, 환경대책입법은 대중적 요법에서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입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환경행정의 현실에서도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진력을 다 하여야한다.<sup>29)</sup>

이와 같이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더불어 환경교육의 문제도 법적 차원에서 보다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겠다. 지금까지는 공학, 교육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환경교육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일관된 교육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더불어 시민과 행정과 기업의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계층간의 상호협력에 의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교육의 역할은 단순하게 자연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대응·협력체제가 굳건히 정비되어야한다.<sup>30)</sup> 이러한 다양한 협력과 협조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우선 지금은 입법적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에

27)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즉 ① 환경오염 원인자의 다양성, ② 오염원인행위의 일상성, ③ 원인행위의 기술적 제거 가능성의 어려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倉阪秀史, “環境保全活動の促進策の考え方と現状”, *ジュリスト*1041号, 1994, 35頁.

28) 서울지판, 1995. 9. 7, 94 카합 6253.

29)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116면 이하.

30)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그 영향은 지구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환경정책은 그야말로 한 개의 국가나 일부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환경대책에 대한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原田尚彦, “公害・環境政策法制の推移と現状”, *ジュリスト*1015号, 1993, 39頁.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사회의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31)</sup>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입법화에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앞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제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제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이론적 지식습득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실천적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환경법, 환경교육, 환경교육법, 환경보전, 환경오염, 환경교육추진법

31) 이용환, 앞의 책, 149면.

## 【참 고 문 헌】

- 박준희, “환경교육”, 환경교육시리즈 제1권 8호, 「환경교육시리즈」, 이화여대 환경문제 연구소, 1973.
- 이용환,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환경교육의 방향”, 「과학과 교육」 제4집, 1996.
- 권중선, “초등학교 실과에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제2권 1호, 1996.
-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 최병두, “대학 및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과학연구」, 제6집 1호, 대구대학교, 1999.
- 방진영·김대희,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제문제와 개선방안”, 「과학과 교육」 제8집, 2000.
- 환경부, 「환경백서」, 2003.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 青里環境教育フォーラム實行委員會編, 「日本型環境教育の提案」, 小學館, 1992.
- 阿部治, “環境教育のあり方”, JURIST1015号, 1993.
- 原田尚彦, “公害・環境政策法制の推移と現状”, JURIST1015号, 1993.
- 倉阪秀史, “環境保全活動の促進策の考え方と現状”, JURIST1041号
- 石野耕也, “環境基本法の制定経緯と概要”, JURIST 1041号, 1994.
- 山村恒年, 「環境保護の法と政策」, 信山社, 1996.
- 山村恒年, “國家のゆらぎと環境法”, 「公法研究」, 2002.
- 池田研造, “環境保全意欲増進・環境教育推進法”, JURIST1252号, 2003.
- UNESCO, Connect 1(1), 1975.
- Stapp, William B,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UNESCO-UNEP Programm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8(2), 1976.
- Disinger, John F. “What Research Says” School Sci. Mathe., 85(1), 1985.
-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1990 (Public Law 101-619).
- Marcinkowski, Thomas, J. The New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 A Renewal of Commit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Vol. 22, No 2, 1990.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Education Division, Report Assess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1990.

**【Abstract】**

**A Legal Study on Environmental Education**

Chae, Woo-Suk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of 1990 (P.L. 101-619) established in America. And in passing a statute rela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Japanese Congress was responding to many of the issues and challenges currently facing the field of environmental education, such as the need for improving access to quality educational materials and programs,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teacher education, reaching new audiences, encouraging environmental careers, and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Environmental education is relevant to our everyday lives because it can ensure the health and welfare of our earth. In Korea many citizens and national organizations desire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Education Act should be established.